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9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2월 20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란 규정이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정리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를 삭제함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1조(목적)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<u>별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제8호까지의 규정</u>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-----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--.</p>	<p>제2조(정의)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
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<u>서울특별시</u> 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서울특별시</u>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/p>	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 <u>서울특별시</u>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②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</p>	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 <p>②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

1. ~ 2. (생략)

3.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

4. (생략)
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서울특별시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시장-----

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시장-----

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시장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시장-----

② 시장-----

③ 시장-----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시장-----

② 시장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(개정안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5.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

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① ~ ③ (생략)

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

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생략)

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.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

① 시장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-----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전화, 서면 -----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

① -----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-----

③ -----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

(개정안과 같음)

1. (개정안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기준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시장

-----.

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19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2조제1호”를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”을 “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강구해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전화,서면”을 “전화, 서면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전단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”를 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<u>법 제2조제1호</u>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 <u>서울특별시장은</u>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장은</u>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3. <u>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</u>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. (생략) 5. 그 밖에 <u>서울특별시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<u>서울특별시장은</u>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<u>서울특별시장은</u>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<u>서울특별시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</u>」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-----.</p> 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② <u>시장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</u>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시장</u>----- <p>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<u>시장</u>-----</p> <p>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<u>시장</u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시장</u>-----

②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생략)

② 시장-----
-----.

③ 시장-----
-----.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시장-----

----- 마련하여야 --.

② 시장-----

-----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-----

-----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전화, 서면 -----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① -----
-----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.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기준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.

<신 설>

② 시장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-----

-----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시장-----

-----.

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 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